

규제영향분석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 1.보청기기 보조장비 구비·안내 의무
- 2.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작 성 자	이름	이진우
	담당부서 (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차전경		연락처	044-202-3304
	과장	이춘희		이메일	jinu1631@mail.g o.kr

2026. 09. 01.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 국장 성명 :

차전경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비 · 안내 의무											
	2.규제조문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3.위임법령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07~2026.10.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 21116호) 개정에 따라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비치해야 하는 장애인 비치용품에 보청기기 외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규정하여 청각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											
	7.규제내용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비 · 안내 의무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현행 보청기기를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table><thead><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head><tbody><tr><td>피규제자</td><td>현행 보청기기를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 제1종근린생활시설 내 읍 · 면 · 동사무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공공도서관 － 문화 및 집회시설 내 공연장, 관람장 － 교육연구시설의 도서관 －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td><td>보청기기 비치 시설은 약 6,672개소이나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 시설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 · 운영되는 기관에 적용하므로 5년 평균 해당 시설 신규 개소수 65개소 규모</td></tr><tr><td>이해관계자</td><td>청각장애인</td><td>’25년 말 청각장애인 449천명</td></tr></tbody></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현행 보청기기를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 제1종근린생활시설 내 읍 · 면 · 동사무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공공도서관 － 문화 및 집회시설 내 공연장, 관람장 － 교육연구시설의 도서관 －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보청기기 비치 시설은 약 6,672개소이나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 시설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 · 운영되는 기관에 적용하므로 5년 평균 해당 시설 신규 개소수 65개소 규모	이해관계자	청각장애인	’25년 말 청각장애인 449천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현행 보청기기를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 제1종근린생활시설 내 읍 · 면 · 동사무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공공도서관 － 문화 및 집회시설 내 공연장, 관람장 － 교육연구시설의 도서관 －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보청기기 비치 시설은 약 6,672개소이나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 시설은 시행규칙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 · 운영되는 기관에 적용하므로 5년 평균 해당 시설 신규 개소수 65개소 규모										
이해관계자	청각장애인	’25년 말 청각장애인 449천명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를 통한 청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3171.08		3171.08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3171.08		383.49
15.규제정비 계획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해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 ----- ---점자 안내책자, <u>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치</u> ----- ----- ----- ----- ----- -----.																																																					
<u>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u>		<u>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u>																																																					
<table><tr><th rowspan="2">대상시설</th><th colspan="2">비치용품</th></tr><tr><th>의무용품</th><th>권장용품</th></tr><tr><td rowspan="3">제1종 근린 생활 시설</td><td>읍·면·동사무소</td><td>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u>보청기기</u>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td><td>편의시설 안내지도</td></tr><tr><td>우체국, 전신전화국</td><td>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u>보청기기</u></td><td>점자업무 안내책자</td></tr><tr><td>공공 도서관</td><td><u>보청기기</u></td><td>저시력용 독서기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td></tr><tr><td rowspan="2">문화 및 집회 시설</td><td>공연장, 관람장</td><td><u>보청기기</u></td><td>점자공연 안내책자</td></tr><tr><td>전시장, 동·식물원</td><td></td><td>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td></tr><tr><td>판매</td><td>바닥면적의</td><td></td><td>음성계산기</td></tr></table>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u>보청기기</u>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	편의시설 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u>보청기기</u>	점자업무 안내책자	공공 도서관	<u>보청기기</u>	저시력용 독서기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관람장	<u>보청기기</u>	점자공연 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	바닥면적의		음성계산기	<table><tr><th rowspan="2">대상시설</th><th colspan="2">비치용품</th></tr><tr><th>의무용품</th><th>권장용품</th></tr><tr><td rowspan="3">제1종 근린 생활 시설</td><td>읍·면·동사무소</td><td>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u>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u>, 전동보장구충전시설</td><td>편의시설 안내지도</td></tr><tr><td>우체국, 전신전화국</td><td>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u>보청기기 및 보조장비</u></td><td>점자업무 안내책자</td></tr><tr><td>공공 도서관</td><td><u>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u></td><td>저시력용 독서기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td></tr><tr><td rowspan="2">문화 및 집회 시설</td><td>공연장, 관람장</td><td><u>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u></td><td>점자공연 안내책자</td></tr><tr><td>전시장, 동·식물원</td><td></td><td>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td></tr><tr><td>판매</td><td>바닥면적의</td><td></td><td>음성계산기</td></tr></table>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u>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u> , 전동보장구충전시설	편의시설 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u>보청기기 및 보조장비</u>	점자업무 안내책자	공공 도서관	<u>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u>	저시력용 독서기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관람장	<u>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u>	점자공연 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	바닥면적의		음성계산기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u>보청기기</u>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	편의시설 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u>보청기기</u>	점자업무 안내책자																																																				
	공공 도서관	<u>보청기기</u>	저시력용 독서기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관람장	<u>보청기기</u>	점자공연 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	바닥면적의		음성계산기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u>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u> , 전동보장구충전시설	편의시설 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u>보청기기 및 보조장비</u>	점자업무 안내책자																																																				
	공공 도서관	<u>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u>	저시력용 독서기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관람장	<u>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u>	점자공연 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	바닥면적의		음성계산기																																																				

현행

시설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점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장애인용 쇼핑카 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교육 연구 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u>보청기기</u>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 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및 전동보장 구충전시설
노유자 시설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업무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로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 당하지 아 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 (사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 의 확대경, 공중팩 스기 및 <u>보청기</u> <u>기</u>	점자업무안내 책자, 편의시 설안내지도, 컴 퓨터(정보통신보 조기기를 포함한다) 및 전동보장 구충전시설
숙박 시설	관광숙박 시설		점자관광 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식탁및휴대용 경사로	
운동 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개정안

시설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점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장애인용 쇼핑카 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교육 연구 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u>보청기기 및</u> <u>보청기기 보조장</u> <u>비</u>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 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및 전동보장 구충전시설
노유자 시설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업무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로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 당하지 아 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 (사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 의 확대경, 공중팩 스기, <u>보청기기 및</u> <u>보청기기 보조장</u> <u>비</u>	점자업무안내 책자, 편의시 설안내지도, 컴 퓨터(정보통신보 조기기를 포함한다) 및 전동보장 구충전시설
숙박 시설	관광숙박 시설		점자관광 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식탁및휴대용 경사로	
운동 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현행	개정안
같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3.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4. 장례식장(병원, 화장시설 내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빈소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고 경사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휴대용 경사로를 비치해야 한다.	같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청취증폭기) 등 개인의 청각 기능을 보완하거나 음성 청취를 지원하기 위한 기기를 말한다. 3.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공공시설의 특정 공간 내에서 청각장애인이 주변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음성 신호를 명료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마이크 등으로 수집된 음성을 무선신호로 변환하여 보청기기 또는 별도의 수신기에 전달하는 청취보조시스템(Assistive Listening System)을 말한다.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비치한 경우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이를 비치한 위치를 안내해야 한다. 4.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5. 장례식장(병원, 화장시설 내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빈소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고 경사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휴대용 경사로를 비치해야 한다.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 관련) 1. 삭제 <1999.6.8> 2. 안내표시기준 가.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마.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 관련) 1. 삭제 <1999.6.8> 2. 안내표시기준 가.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마.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바.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 하단에는 <u>보청기기 보조장비 사용구역임을 표기하여야 한다</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16호)이 2026.11.12. 시행됨에 따라 시행법률 개정 사항에 맞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 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 증진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안내 의무
	내용	보청기기 비치 의무가 있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에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 의무
규제대안2	대안명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 권장
	내용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 권장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 유지안	신설 규제로 현행 규제 없음	신설 규제로 현행 규제 없음
규제대안1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보청기기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현행 보청기기 비치 의무가 있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적용시 정책 적합성 높음	보청기기 외 추가적인 보청기기 보조 장비 구비에 따른 재정적 부담 발생
규제대안2	보청기기 보조장비 권장에 따라 해당 시설별 재정적 여건 등을 반영 하여 탄력적 운영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기본적으로 보청 기기와 연동되는 것으로 권장사항일 경우 정책 실효성 약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16호)이 2026.11.12.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보청기기를 비치하고 있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 보청기기 보조장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의 특성에 맞게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기술발전 등으로 신규 개발되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3. 규제목표

- 청각장애인·난청인이 증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중이 빈번히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 분야에 편의제공 기반 마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보청기기 사용자의 소리를 보다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장비로서 보청기기를 비치하는 대상시설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시설 특성에 맞게 시설주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설정과 동시에 사업 현장의 선택 가능성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미설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미국, 영국에서는 의사소통에 중요한 집회 공간 등에 청각보조 청취 시스템의 설치 대상, 수량, 기술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타법사례

: 해당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안내 의무>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3,171.08 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안내 의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171.08		3,171.0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3,171.08		3,171.08
기업순비용		3,171.08	연간균등순비용	383.49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제공 수단에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보청기기 의무 비치 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상 의무 사항에 해당되어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보청기기 비치 의무시설에 보청기기의 보조장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관련 기기 구매 등 행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보청기기 구매시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함께 구비하는 것으로 법령 의무사항이므로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집행 가능성 높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25.11.11, '26.11.12. 시행 예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6.10.31.)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비 여부 지속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실시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사항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4. 종합결론

- 청각장애인 증가 등에 따라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비치해야 하는 용품에 보청기기 외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도모
- 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를 마련하여 해당 시설별 용도 및 목적에 따라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의 목적 및 규제의 정도 등을 고려시 타당한 규제로 판단됨

별 첨**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안내 의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171.08		3,171.0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3,171.08		3,171.08
기업순비용		3,171.08	연간균등순비용	383.49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안내 의무>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보청기기 비치 의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활동제목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
비용항목	기타
비용	3,171,081,155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보청기기 보조장비 상품 평균 가격*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 신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5900000*65)
근거설명	보청기기 보조장비 상품 평균 가격 : 5,900,000원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 신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연간 65개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청각장애인
활동제목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
편익항목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해당 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2.규제조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3.위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07~2026.09.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 규정은 있으나 해당 등받이 세부기준이 부재하여 과도하게 큰 등받이 설치 등으로 물내림 버튼과 교차되는 등 사용불편 초래함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 세부기준 마련												
	7.규제내용	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div>○ (피규제자) 장애인 이용 화장실 설치 대상시설</div> <div>○ (이해관계자) 장애인 당사자(2,672천명, `25년 기준)</div>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장애인 화장실 설치 대상시설</td><td>1,670개소</td></tr><tr><td>이해관계자</td><td>장애인 당사자</td><td>`25년 말 기준 2,672천명 장애인</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장애인 화장실 설치 대상시설	1,670개소	이해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25년 말 기준 2,672천명 장애인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장애인 화장실 설치 대상시설	1,670개소												
이해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25년 말 기준 2,672천명 장애인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장애인 화장실 이용 편의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2338.25		2338.25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2338.25		282.78		
15.규제정비 계획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u>(제2조제1항 관련) 13.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3) 기타 설비 <u>(다)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 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u> 나. 대변기 < 신 설 >	<u>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u>(제2조제1항 관련) 13.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3) 기타 설비 (다)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 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세정장치는 대변기 등받이와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u> 나. 대변기 (4) 대변기 등받이 (가) 등받이는 대변기 손잡이, 비상벨, 휴지걸이, 세정장치 등의 기타 설비 이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튼튼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등받이의 높이는 150밀리미터 이상 200밀리미터 이하로, 그 너비는 350밀리미터 이상 40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등받이의 하단은 좌대 상단면으로부터 120밀리미터 이상 15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그 각도는 <u>현지를 기준으로 후방으로 95도 이상 100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u> (라) 등받이는 대변기 좌면 앞 끝과 등받이 표면 사이의 거리가 500밀리미터 이상 550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 자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장애인·노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장애인 이용 화장실 세부기준에 대변기 등받이 용어 규정
- 다만, 대변기 등받이 세부규정이 부재하여 일부 장애인 화장실에는 과도하게 큰 등받이 설치로 인해 물내림 버튼과 교차되는 등 장애인 화장실 사용에 불편 초래
 -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장애인 화장실 이용 편의성 제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적용
	내용	장애인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대변기 등받이 크기, 각도 등 세부기준 적용
규제대안2	대안명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일부 적용
	내용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 크기 기준 적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대변기 등받이 크기, 각도 등 전반적인 기준 적용으로 실제 이용 환경 개선	대변기 등받이 크기, 각도 등 세부기준 적용으로 재정 부담
규제대안2	대변기 등받이 크기 기준만 적용하여 재정 부담 완화	대변기 등받이 크기 기준 적용으로 실제 이용에 불편 초래 가능성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별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미실시하였으나 장애인 단체 등에서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마련 요청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장애인 화장실 내 대변기 등받이 규정은 있으나 세부기준이 부재하여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함에 따라, 실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변기 등받이 크기, 각도 등 전반적인 부분의 세부기준 마련 필요

3. 규제목표

- 장애인 일상생활의 필수시설인 화장실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화장실 이용 편의 제공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현행 시행규칙상에는 대변기 등받이를 설치하도록 기 규정되어 있지만, 세부기준 부재로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함에 따라, 장애인이 화장실 이용에 애로점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대변기 등받이 크기, 각도 등 세부기준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 타당성 존재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미설정)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세부기준 역시 계속 유지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적용>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2,338.25 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적용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338.25		2,338.2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2,338.25		2,338.25
기업순비용		2,338.25	연간균등순비용	282.78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도 장애인 이용 화장실 내 대변기 등받이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항목으로 신규 장애인 화장실 대상으로 세부기준 크기 및 각도 기준이 적용된 대변기 등받이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준수하기 어려운 사항은 아님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 시공 및 준공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변기 등받기에 세부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 크지 않아 집행행 가능성 높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마련 관련 연구('25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6.11.)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사항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4. 종합결론

- 장애인 이용 화장실은 장애인분들의 외부 활동에 필수적인 편의 시설로서, 장애인 화장실 이용 편의 제공 지원 필요
- 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의 크기, 각도 등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 지원에 필요한 타당한 규제로 판단

별첨**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적용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338.25		2,338.2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2,338.25		2,338.25
기업순비용		2,338.25	연간균등순비용	282.78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적용>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장애인 이용 화장실 설치 대상시설
활동제목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 설치
비용항목	기타
비용	2,338,257,673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장애인화장실 등받이 설치 비용 * 장애인 화장실 신규 설치 대상시설 (169330*1670)
근거설명	○ (대변기 등받이 설치 비용) 현재 유통되고 있는 대변기 등받이 평균 가격 적용(169,330원) ○ (피규제자 수) 연도별 장애인 화장실 설치 적용 시설 규모(연간 1,670개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등록 장애인
활동제목	장애인 화장실 이용
편익항목	장애인 화장실 이용 편의 제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장애인 이용 화장실 등받이 세부기준 적용에 따라 등록 장애인 전체 장애인 화장실 이용 편의 제공